

제 3 절

선거사무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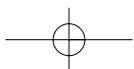
· 선거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7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인 2008년 4월 9일 실시하였다. 1996년부터 선거일이 공고주의에서 법정주의로 변경되어 사전에 선거일정에 따라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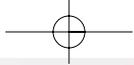
선거일

러나 선거일이 채 1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투표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이 개정·공포되어 단기간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시행함으로써 관련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표 3-1)



[표 3-1] 역대 국회의원선거일

역대별	공 고 일		선 거 일		선거 기간	임 기	의원 정수	지 역 선거구수	비 고 (해 산)
	연월일	요일	연월일	요일					
제 헌	1948. 3. 30	화	1948. 5. 10	월	42일	2년	200명	200개	
제2대	1950. 4. 12	수	1950. 5. 30	화	49일	4년	210명	210개	
제3대	1954. 4. 7	수	1954. 5. 20	목	44일	4년	203명	203개	
제4대	1958. 3. 31	월	1958. 5. 2	금	33일	4년	233명	233개	1960. 6. 23
제5대	1960. 6. 27	월	1960. 7. 29	금	33일	4년	233명	233개	1961. 5. 16
제6대	1963. 10. 26	토	1963. 11. 26	화	32일	4년	175명	131개	
제7대	1967. 5. 8	월	1967. 6. 8	목	32일	4년	175명	131개	
제8대	1971. 5. 1	토	1971. 5. 25	화	25일	4년	204명	153개	1972. 10. 17
제9대	1973. 2. 9	금	1973. 2. 27	화	19일	6년	219명	73개	
제10대	1978. 11. 24	금	1978. 12. 12	화	19일	6년	231명	77개	1980. 10. 27
제11대	1981. 3. 5	목	1981. 3. 25	수	21일	4년	276명	92개	
제12대	1985. 1. 23	수	1985. 2. 12	화	21일	4년	276명	92개	
제13대	1988. 4. 8	금	1988. 4. 26	화	19일	4년	299명	224개	
제14대	1992. 3. 7	토	1992. 3. 24	화	18일	4년	299명	237개	
제15대	선거일 법정화		1996. 4. 11	목	17일	4년	299명	253개	
제16대	선거일 법정화		2000. 4. 13	목	17일	4년	273명	227개	
제17대	선거일 법정화		2004. 4. 15	목	14일	4년	299명	243개	
제18대	선거일 법정화		2008. 4. 9	수	14일	4년	299명	245개	



선거인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수는 전국 인구수 49,315,006명 중 76.6%에 해당하는 37,796,035명으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수 35,596,497명보다 2,199,538명(6.2%)이 증가하였다. 선거인수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의 하향조정(20세에서 19세로)에 따른 19세 선거권자의 증가와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표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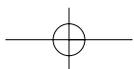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전체 선거인수의 21.9%(8,290,855명), 서울이 21.4%(8,078,355명) 순이고,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선거인수가 전체의 48.7%(18,387,909명)를 차지하며, 성별로는 남자가 49.2%(18,610,000명), 여자가 50.8%(19,186,035명)로 나타났다.(표 3-3)

한편, 245개 지역구의 평균 선거인수는 154,270명으로 최다선거구는 강남구갑 243,349명, 최소선거구는 영천시 85,779명이었고, 13,246개 투표구의 평균 선거인수는 2,853명으로 최다투표구는 화성시 봉담읍 제9투표구 6,322명, 최소투표구는 인천서구 신현원창동 제5투표구(세어도) 36명이었다.

[표 3-2] 인구수 및 선거인수 변화추이

(단위 : 명, %)

구 분	제16대국선 (2000년)	제3회지선 (2002년)	제16대대선 (2002년)	제17대국선 (2004년)	제4회지선 (2006년)	제17대대선 (2007년)	제18대국선 (2008년)
인구수 (A)	47,424,300	48,139,782	48,191,877	48,426,757	48,855,598	49,219,516	49,315,006
선거인수 (B)	33,482,387	34,744,232	34,991,529	35,596,497	37,064,282	37,671,415	37,796,035
비율 (B/A)	70.6	72.2	72.6	73.5	75.9	76.5	76.6



[표 3-3] 시·도별 선거인수 현황

(단위 : 명)

수도권		중부권(강원포함)		영남권		호남권(제주포함)	
시·도별	선거인수	시·도별	선거인수	시·도별	선거인수	시·도별	선거인수
서울	8,078,355	대전	1,101,299	부산	2,841,445	광주	1,034,393
인천	2,018,699	강원	1,166,766	대구	1,899,679	전북	1,424,401
경기	8,290,855	충북	1,151,531	울산	812,693	전남	1,496,888
		충남	1,542,618	경북	2,097,907	제주	413,904
				경남	2,424,602		
계	18,387,909	계	4,962,214	계	10,076,326	계	4,369,586
전국대비 48.7%		전국대비 13.1%		전국대비 26.6%		전국대비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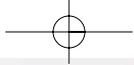
| 01 | 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 작성 및 감독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국민을 대상으로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투표구별로 직권 작성하며,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19일(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선거인명부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2008년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 1989년 4월 10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전산조작을 이용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였다. 구·시·군위원회는 작성기간 동안 서면감독 등을 통하여 사망, 오기, 결격자 등 총 5,649건을 시정 조치하였다.(표 3-4)



선거인명부 감독



Part 01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표 3-4] 선거인명부 작성 감독상황

(단위 : 명, %)

구분	계	누락	사망	연령미달	오기	결격자	기타
제17대 국선	6,130	110	1,748	1	2,150	1,247	874
제18대 국선	5,649	56 (1.0)	3,563 (63.1)	5 (0.1)	168 (3.0)	1,321 (23.4)	536 (9.5)
증 감	△481	△54	1,815	4	△1,982	74	△338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누락자 등재신청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기 전에 오기 등을 수정하고 명부누락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인 2008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구·시·읍·면 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열람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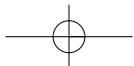
선거인명부 열람

이번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 구·시·읍·면의 장은 사망자나 선거권이 없는 자 또는 이중등재된 자 등에 대한 직권수정으로 10,061명을 삭제하였고, 이의신청과 불복신청 절차에 따라 277명을 삭제하였으며, 누락된 선거권자 66명은 추가 등재하였다.(표 3-5)

[표 3-5] 명부누락자 등재신청 및 결정상황

(단위 : 건, 명)

구분	신청건수	신청자수	추가등재자수	결정서지참 투표자수
제17대 국선	통계 없음	통계 없음	395	통계 없음
제18대 국선	72	77	66	9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인명부는 열람, 이의신청·불복신청 및 명부누락자 등재신청 등 구제절차를 거쳐 선거일 전 7일인 2008년 4월 2일 최종 확정되었다. 확정된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작성시 등재된 선거인수 37,806,296명보다 10,261명 감소된 37,796,035명이었다.(표 3-6)

[표 3-6]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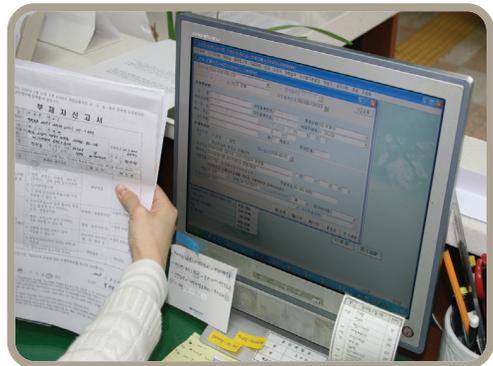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선거인명부 등재 (A)	작권수정 및 이의신청 등 (B)	확정된 선거인수		
			계(A-B)	남	여
제17대 국선	35,607,296	△ 10,799	35,596,497	17,490,343	18,106,154
제18대 국선	37,806,296	△ 10,261	37,796,035	18,610,000	19,186,035
증 감	2,199,000	△ 538	2,199,538	1,119,657	1,079,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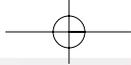
| 02 | 부재자신고인명부

부재자신고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 중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 선거에서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인 2008년 3월 21부터 3월 25일까지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표 3-7]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상황

(단위 : 명)

구분	계	부재자투표소투표자				거소투표자		
		소계	일반	선거종사자	군인·경찰	소계	일반	군인·경찰
제17대 국선	885,938	826,965	116,366	70,764	639,835	82,661	29,506	29,467
제18대 국선	825,855	743,194	87,370	88,809	567,015	58,973	43,794	38,867
증 감	△60,083	△83,771	△28,996	18,045	△72,820	23,688	14,288	9,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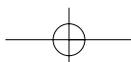
5일간 부재자신고서를 접수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였고,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인 3월 26일에 명부를 확정하였다.

확정된 부재자신고인수는 선거인수의 2.2%인 825,855명으로 군인·경찰관이 605,882명(73.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일반인이 131,164명(15.9%), 선거사무종사자가 88,809명(10.6%)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재자신고인수 최다구시군은 서울 노원구(10,633명)이며 최소구시군은 경북 영양군(526명)이었다.(표 3-7)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제도는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도입되어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20일인 2007년 12월 11일(화)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였다.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총 2,593명이었으나 사퇴·사망·등록무효 등 569명을 제외한 최종 예비후보자수는 2,024명이었으며, 이들 중 53.0%인 1,072명이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였다.(표 3-8, 표 3-9)



[표 3-8] 예비후보자 등록상황 (최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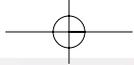
구분	선거구수	예비후보자 등록수			선거구 평균
		계	등록	사퇴 등	
제17대 국선	243	1,419	1,350	69	5.6
제18대 국선	245	2,593	2,024	569	8.3
증 감	2	1,174	674	500	△2.7

[표 3-9] 정당별 예비후보자 등록 등 현황

(단위 : 명)

구 분	예비후보자 등록수	예비후보자중 후보자로 등록한 수	예비후보자 등록없이 후보자로 등록한 수
계	2,024	1,072	47
통합민주당	436	192	5
한나라당	747	240	5
민주노동당	107	101	2
자유선진당	143	83	11
친박연대	38	42	11
창조한국당	25	9	3
경제공화당	1	-	-
국민실향안보당	3	2	-
기독교당	3	3	-
구국참사람연합	2	1	-
한국당	1	-	-
자유평화당	6	-	-
직능연합당	1	1	1
진보신당	33	33	1
통일당	3	1	-
평화통일가정당	251	245	-
한국사회당	2	-	-
무소속	222	119	8

※후보자등록시 당적을 변경하여 무소속으로 등록한 자도 있음.



Part 01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 ● ●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그때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일정수의 유급 선거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유권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홍보물과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원회를 두고 이를 통하여 1억 5천만원 이내의 정치자금도 모금할 수 있다.

후 보 자



| 01 | 후보자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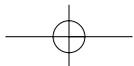
후보자등록은 2008년 3월 25일(화)부터 3월 26일(수)까지 2일간 지역구 후보자는 245개 지역 선거구위원회에서, 비례대표전국선거구(이하 '비례대표'라 함) 후보자는 중앙위원회에서 각각 접수하였다. 지역구 후보자는 13개 정당과 무소속으로 총 1,119명이 등록하여 평균 4.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는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평균경쟁률 4.8 대 1보다 다소 낮아졌으며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구는 성남시 수정구 및 이천시·여주군선거구로 모두 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등록된 후보자 중에서 친박연대 3명, 무소속 3명 등 총 6명의 후보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선거기간 중 사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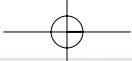


지역구후보자 등록

또한, 54명을 선출하는 비례대표선거에서는 모두 15개 정당에서 190명이 등록하여 3.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를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해 보면 후보자수는 190명으로 같았으나 의원정수가 2명 줄어 경쟁률은 다소 높아졌다.

한편, 등록된 후보자 중에서 친박연대 1명, 기독교사랑실천당 1명 총 2명의 후보자가 이중당적 보유로 등록이 무효되었다.(표 3-10, 표 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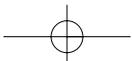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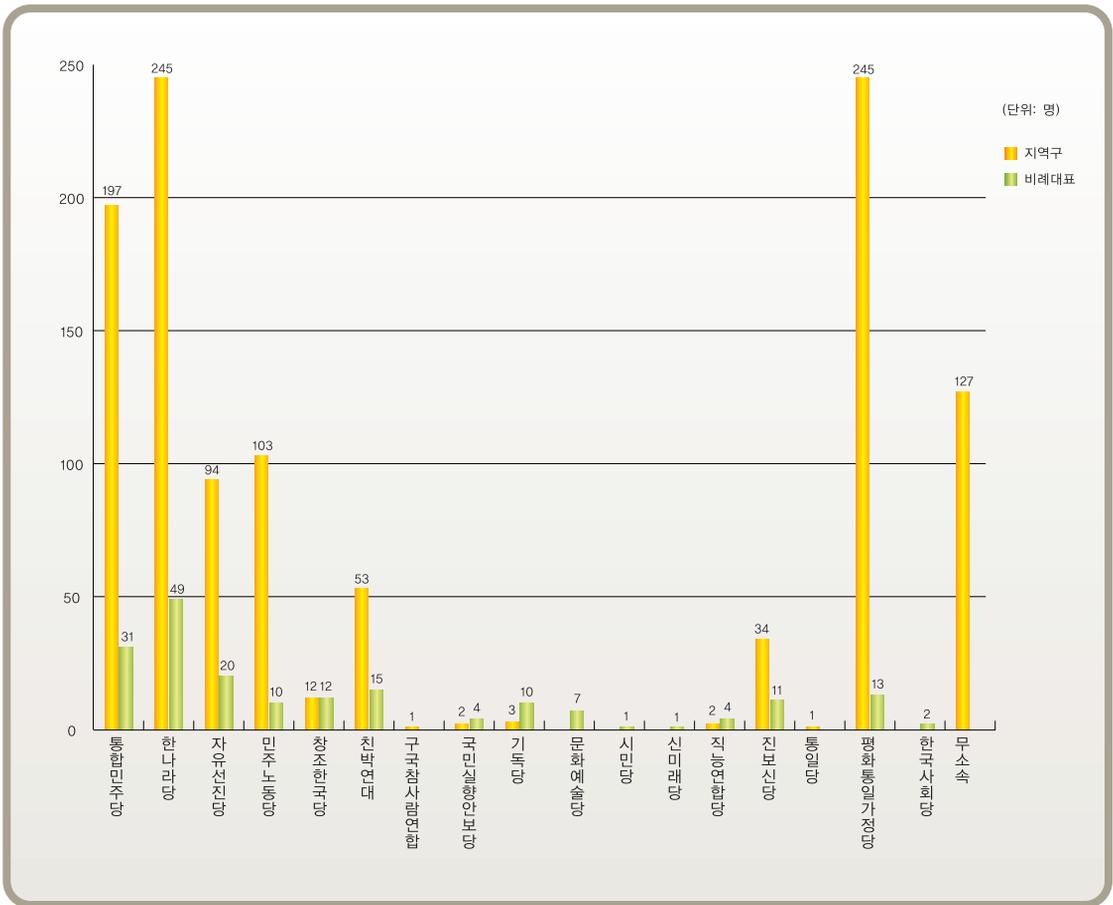


[표 3-10] 후보자 등록상황

(단위 : 명)

구분	선 거 명	정 수	등록후보자수	사퇴·등록무효	평균경쟁률
제17대 국선	계	299	1,365	9	4.6 : 1
	지 역 구	243	1,175	8(사퇴)	4.8 : 1
	비례대표	56	190	1(사퇴)	3.4 : 1
제18대 국선	계	299	1,309	8	4.4 : 1
	지 역 구	245	1,119	6(사퇴)	4.6 : 1
	비례대표	54	190	2(등록무효)	3.5 : 1

[그림 3-1] 정당별 후보자 등록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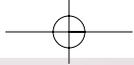
[표 3-11] 사퇴 및 등록무효 현황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한자)	생년월일 (세)	구분	연월일	사유
은평구을	친박연대	장 재 완 (張宰完)	1967. 10. 21 (40세)	사퇴	2008. 4. 8	일신상
울산남구갑	친박연대	이 수 만 (李樹滿)	1942. 3. 10 (66세)	사퇴	2008. 3. 27	일신상
안산시단원구을	친박연대	송 진 섭 (宋振燮)	1949. 8. 13 (58세)	사퇴	2008. 3. 28	일신상
전주시완산구갑	무소속	유 철 갑 (俞鐵鉉)	1947. 4. 14 (60세)	사퇴	2008. 4. 4	일신상
전주시완산구을	무소속	심 영 배 (沈永培)	1954. 10. 15 (53세)	사퇴	2008. 4. 4	일신상
목포시	무소속	이 상 열 (李相烈)	1952. 1. 22 (56세)	사퇴	2008. 4. 5	일신상
비례대표	친박연대	박 성 국 (朴成國)	1962. 11. 20 (45세)	등록무효	2008. 4. 7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4호 (이중당적)
비례대표	기독교당	김 효 정 (金孝貞)	1939. 3. 26 (69세)	등록무효	2008. 4. 7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4호 (이중당적)

| 02 | 후보자정보 공개

후보자들의 자질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후보자정보 공개 제도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시 공개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그 정보가 게재된 ‘후보자정보 공개자료’를 선거구위원회에서 별도로 작성¹⁾하여 매 세대와 부재자신고인에게 발송하도록 하였다.(표 3-12)

¹⁾ 2005년 8월 4일 이후부터는 후보자정보 공개자료를 선거구위원회에서 작성하지 않고 후보자가 작성·제출하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 재산, 병역, 세금, 전과, 학·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였다.



[표 3-12] 후보자정보 공개사항 및 방법 변화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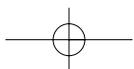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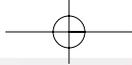
구 분	정보공개 사항 및 방법 변화
제16대 국선 (2000년)	중앙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정보공개 최초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상황 • 후보자의 최근 3년간의 소득세·재산세 납부실적 • 후보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 후보자의 금고이상의 전과기록
제17대 국선 (2004년)	세금납부·체납실적 공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선거구위원회가 '후보자정보 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매 세대 및 부재자신고인에게 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대상기간 : '최근 3년간'에서 '최근 5년간'으로 확대 • 신고대상자 : '후보자 본인'에서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확대 • 신고대상세금에 '종합토지세' 신설
제18대 국선 (2008년)	후보자가 '후보자정보 공개자료'를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에 게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재산, 병역, 세금, 전과, 학·경력 등을 중앙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한편, 정당·후보자는 이들 내용을 책자형 선거공보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발송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자질·공약 등에 대한 비교·평가를 한 후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대상재산 신고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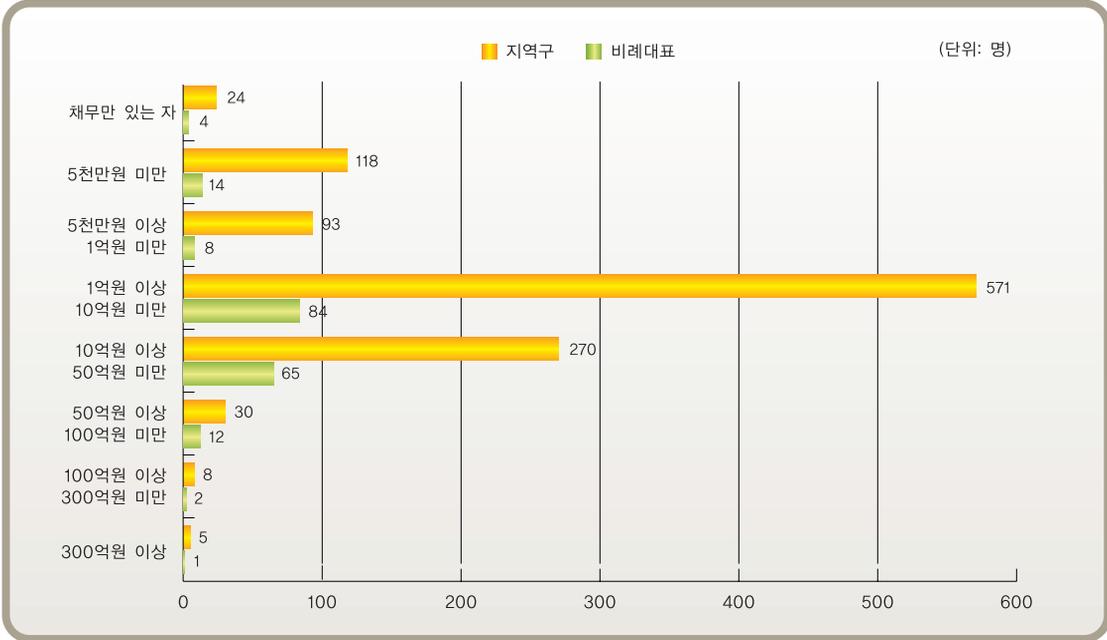
후보자는 본인 외에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등록대상 재산을 전년도 말일을 신고기준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그림 3-2)





Part 01 제8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그림 3-2] 재산신고액별 후보자 등록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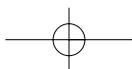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의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2008. 1. 1. 시행)」이 혼인한 여자 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의 범위가 왜곡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종전의 예에 따라 처리하도록 운영²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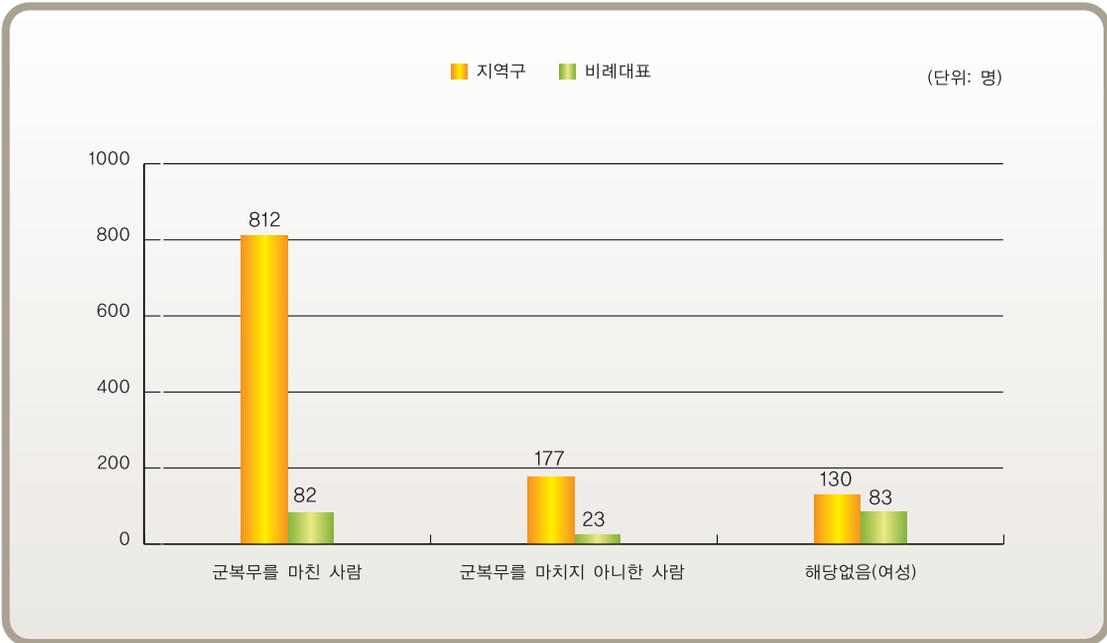
병역사항 신고상황

병역사항 신고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후보자등록개시일 1개월 전인 2008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후보자 본인과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

² 행정안전부에서도 「2008년도 공직윤리업무 추진지침」을 통해 '2008년 정기변동신고를 비롯한 재산등록신고시 개정규정은 당분간 기존의 예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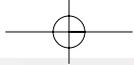
[그림 3-3] 후보자의 병역 신고상황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그림 3-3)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때까지는 후보자 본인은 비공개대상 질병·심신장애로 인해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질병명을 예외없이 공개^③하도록 하였으나, 2007년 12월 14일 관련 법률 개정으로 후보자 본인이 질병·심신장애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그 질병명·심신장애내용을 비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③ 헌법불합치 판결(2007. 5. 31. 2005헌마1139) 이후 2007년 12월 14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직계비속은 물론 후보자 본인까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심신장애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그 질병명·심신장애내용을 비공개 요구할 수 있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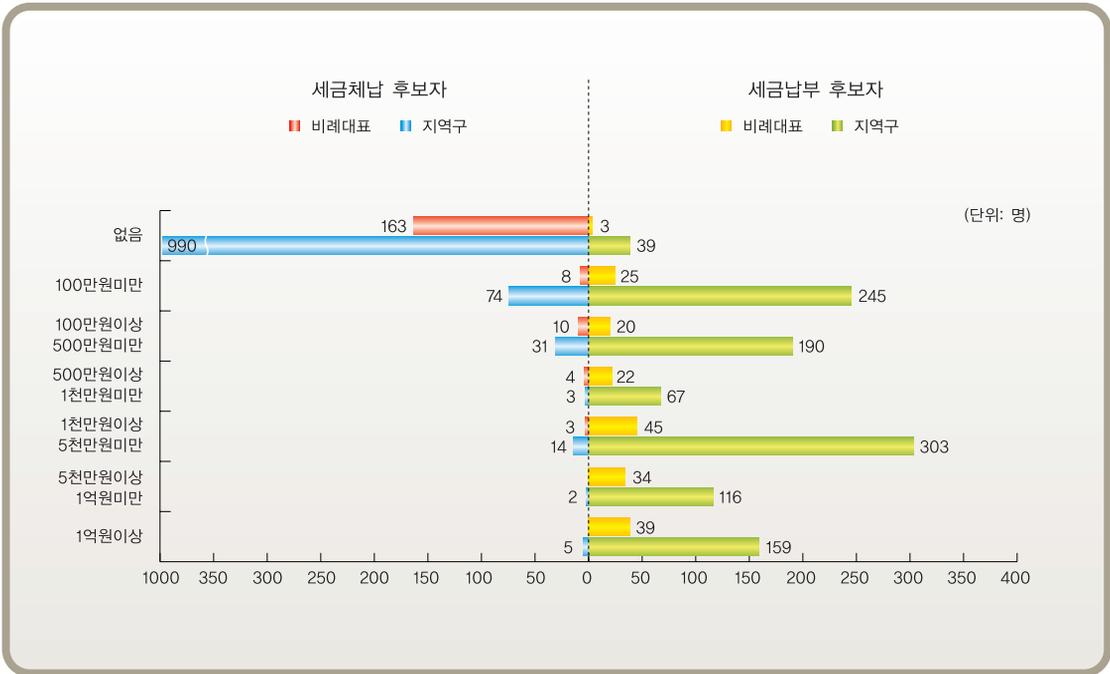
Part 01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상황

후보자는 최근 5년간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실적(체납실적 포함)을 신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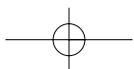
이번 선거에서는 행정안전부 및 국세청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입후보예정자들이 불편없이 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금납부 실적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그림 3-4)

[그림 3-4]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상황



후보자의 전과기록 신고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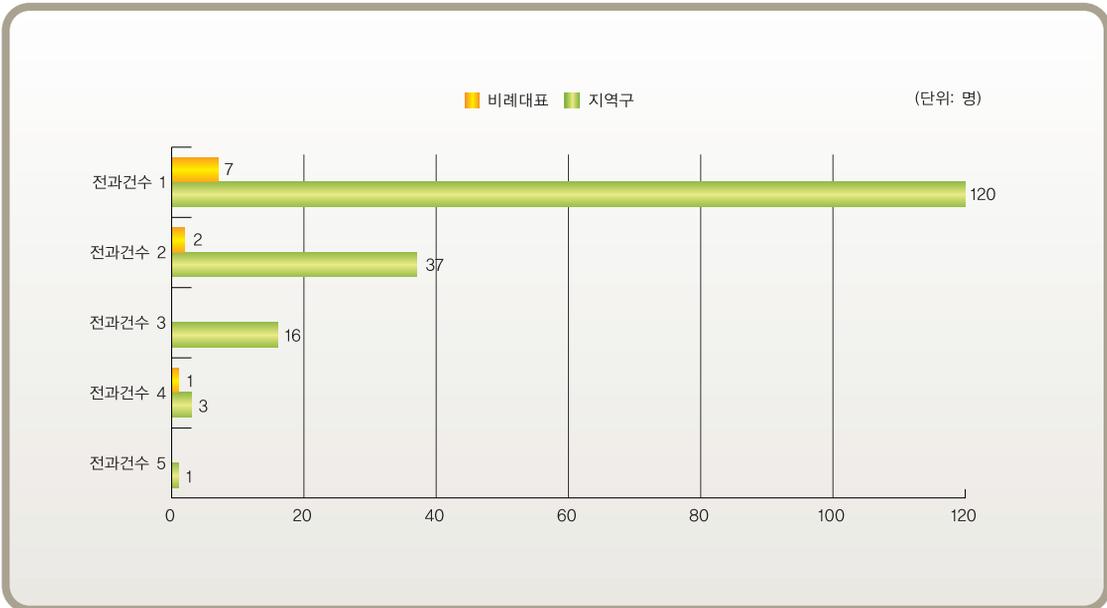
후보자의 도덕성·청렴성·자질 등에 대한 비교·평가를 위하여 2000년 2월 16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시 도입된 제도로 입후보예정자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급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에 관한 증명서류를 후보자등록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선거에



서 금고 이상의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는 총 187명(14.3%)으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241명(17.7%)보다 54명이 감소하였다.(그림 3-5)

한편,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반사회적 파렴치범의 경우 이들 범죄경력은 공개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일부 후보자의 전과기록이 누락되어 증명서류가 발급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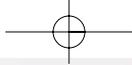
[그림 3-5] 후보자 전과기록 현황



※전과기록이 없는 후보자수 : 지역구 942명, 비례대표 18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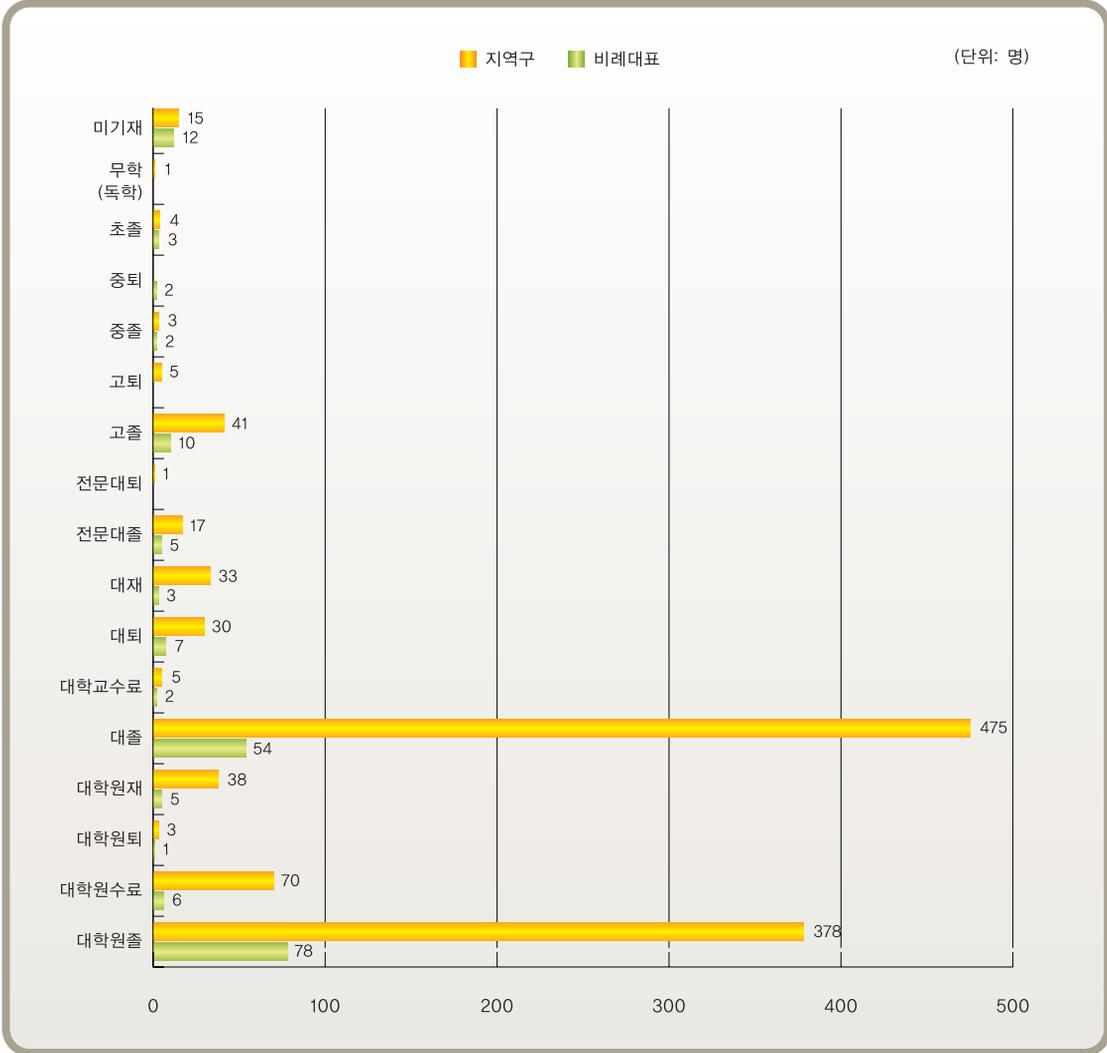
후보자의 학력상황

과거 학력의 허위 기재로 인한 시비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후보자등록시 후보자의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최종학력증명서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나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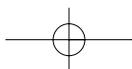


Part 01 제8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그림 3-6] 후보자 학력사항



이수한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증명서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후보자정보공개 자료,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선전벽보·선거공보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 하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이다.(그림 3-6)



| 03 | 기탁금

기탁금이란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입후보의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후보자가 후보자등록신청시 선거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을 말하며, 선거과정 중 선거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을 우선 공제한 후 선거종료 후 30일 이내에 반환요건에 따라 정당·후보자에게 반환하거나 국가에 귀속한다.

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은 1인당 1,500만원으로⁴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 1,309명(지역구 1,119명, 비례대표 190명)이 196억 3,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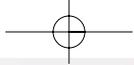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총 779건, 18,382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그중 530건 13,100천원의 과태료를 정당·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였다.

선거종료 후 반환요건⁵에 따라 지역구의 경우에는 당선된 후보자 245명과 전액 반환자 268명, 반액 반환자 63명 등 576명(51.5%)의 후보자에게 총 80억 4,018만원을 반환하였고, 사퇴자 6명을 포함한 기탁금 반환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606명분의 기탁금 85억 6,836만원은 국고에 귀속하였다.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당선인이 있는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6개 정당에는 137명(72.1%)분의 기탁금 20억 5,135만원을 반환하고 당선인이 없는 국민실향안보당 등 9개정당의 53명(29.9%)분의 기탁금 7억 9,482만원은 국고에 귀속하였다.

⁴ 종전 1,000만원이던 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은 제16대 국회의원선거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1,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됨.

⁵ 지역구선거의 경우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인 후보자에게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였으나,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보자에게 반환하도록 기탁금 반환요건이 완화됨.



선거운동



|01| 선거운동기구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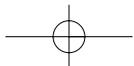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2,593명 중 선거사무소는 2,305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마치면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 없이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

지역구선거는 후보자가 당해 지역구 안에 1개의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으나 지역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비례대표선거에 있어서는 각 정당마다 1개의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1인을 각각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원은 지역구선거의 경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시·군 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 이내, 비례대표선거에서는 선거사무소에 시·도수의 2배수 이내에서 각각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법정선거사무원수에 구애됨이 없이 선임될 수 있으나 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로 등록한 1,119명 중 1,065명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였고, 비례대표선거에 등록한 15개 정당 중 시민당을 제외한 14개 정당에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선거사무관계자는 총 40,495명을 선임하였다.(표 3-13)



[표 3-13] 선거운동기구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상황

(단위 : 개, 명)

구분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관계자							
	지역구			비례대표	계	지역구				비례대표		
	계	사무소	연락소	사무소		사무소		연락소		계	사무소	
						사무장	사무원	연락소장	사무원		사무장	사무원
계	1,242	1,065	177	14	40,495	1,080	33,909	224	5,282	370	14	356
통합민주당	219	186	33	1	7,872	196	6,594	39	1,043	33	1	32
한나라당	281	235	46	1	9,946	238	8,170	57	1,481	33	1	32
자유선진당	103	87	16	1	3,397	94	2,807	20	476	23	1	22
민주노동당	107	100	7	1	3,500	100	3,205	11	184	33	1	32
창조한국당	12	12	-	1	238	13	225	-	-	28	1	27
친박연대	55	48	7	1	1,673	48	1,402	10	213	33	1	32
구국참사람연합	1	1	-	-	1	1	-	-	-	-	-	-
국민실향안보당	2	2	-	1	11	1	10	-	-	24	1	23
기독교당	3	3	-	1	58	3	55	-	-	33	1	32
문화예술당	-	-	-	1	-	-	-	-	-	33	1	32
신미래당	-	-	-	1	-	-	-	-	-	2	1	1
직능연합당	-	-	-	1	33	1	32	-	-	32	1	31
진보신당	36	33	3	1	853	31	792	2	28	27	1	26
평화통일가정당	270	235	35	1	7,785	236	6,708	46	795	31	1	30
한국사회당	0	-	-	1	-	-	-	-	-	5	1	4
무소속	153	123	30	-	5,128	118	3,909	39	1,062	-	-	-



|02|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홍보물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제작하여 직접 배부하거나 홍보물을 작성하여 배부할 수 있다. 홍보물에는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우편 발송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등록된 예비후보자 총 2,593명 중 82.7%인 2,144명이 총 9,848,380매의 홍보물을 발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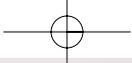
선전벽보

2008년 3월 17일까지 지역구 후보자가 작성·제출할 선전벽보의 매수를 선거구위원회별로 공고하였으며 후보자는 이를 작성하여 2008년 3월 29일까지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구·시·군위원회는 선전벽보를 선전벽보판에 끼워 넣는 작업 등을 거친 후 3월 31일까지 총 91,670개소의 지정된 장소에 첩부하였다.

첩부기준은 동 및 읍에서는 인구 1,000명에 1매, 인구 2만을 넘는 면에서는 인구 500명에 1매, 인구 1만명을 넘는 면에서는 인구 200명에 1매, 인구 1만명 이하의 면에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로 각각 첩부하였다.(표 3-14)



선전벽보 (충북 제천·단양군)



[표 3-14] 선전벽보 제출·첨부상황

(단위 : 명, 매, 개소)

지역구 후보자수	제출매수			첨부매수	보안첨부용 검인매수	첨부장소수
	법정매수	제출매수	미제출매수			
1,119	447,335	446,747	588	418,831	13,826	91,670

한편,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비례대표선거에서도 선전벽보를 작성·첨부하였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비례대표선거의 선전벽보를 폐지하는 대신,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발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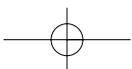
선거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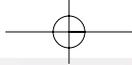
선거구위원회는 2008년 3월 17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작성·제출할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포함)의 매수를 공고하였고, 정당·후보자는 이를 작성하여 부재자용은 3월 29일까지, 매세대용은 4월 1일까지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구·시·군위원회는 부재자신고인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동봉하여 3월 31일까지, 매 세대에는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4월 4일까지 우편 발송하였다.(표 3-15, 표 3-16)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2종의 소형인쇄물을 책자형 선거공보 1종으로 통합하는 대신, 후보자의 정보공개자료를 선거공보 둘째 면에 게재하도록 하였고 비례대표선거에서도 선전벽보를 폐지하는 대신, 선거공보를 작성·발송하도록 하였다.



선거공보 발송작업





[표 3-15] 선거공보 제출상황

(단위 : 명, 배)

구분	후보자수(정당수)				일반형			점자형		
	계	전부 제출	일부 제출	미제출	법정매수	제출매수	미제출매수	법정매수	제출매수	미제출매수
지역구	1,119	1,107	4	8	90,613,825	90,118,592	495,233	307,580	186,028	121,552
비례대표	15	6	4	5	293,981,790	165,370,006	128,611,784	996,150	397,410	598,740

[표 3-16] 선거공보 발송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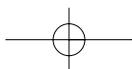
(단위 : 명, 배)

구분	후보자수 (정당수)	점자형 선거공보		일반형 선거공보			
		발송통수	발송매수	매세대		부재자	
				발송통수	발송매수	발송통수	발송매수
지역구	1,113	60,812	177,207	18,629,493	85,463,240	825,658	3,931,220
비례대표	15	61,340	368,286	18,629,472	156,609,961	825,658	6,550,197

| 03 |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신문광고

비례대표선거에서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 총 20회 이내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자유선진당만이 신문광고 법정 상한횟수를 모두 실시한 반면, 문화예술당, 시민당, 신미래당, 직능연합당은 광고를 전혀 실시하지 않아 정당별로 많은 차이가 있었다.(표 3-17)



[표 3-17] 신문광고 실시현황

(단위 : 회)

계	통 합 민주당	한나라당	자 유 선진당	민 주 노동당	창 조 한국당	친 박 연 대	국민실향 안보당	기독교당	진 보 당	평화통일 가정당	사회당
120	12	11	20	19	3	17	4	14	7	12	1

방송광고

비례대표선거에서 정당은 선거운동기간 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5회 이내에서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15개 정당 중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친박연대, 진보신당, 평화통일가정당은 법정 상한횟수의 광고를 모두 실시한 반면, 국민실향안보당, 기독교당, 시민당, 신미래당, 한국사회당은 방송광고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는바, 이들 정당들은 선거비용의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친박연대는 한나라당 박근혜 前대표의 대표시절 활동장면과 이번 선거의 공천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장면을 방송광고로 활용해 이의 적법성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표 3-18)

[표 3-18] 방송광고 실시현황

(단위 : 회)

구 분	계	통 합 민주당	한나라당	자 유 선진당	민 주 노동당	창 조 한국당	친 박 연 대	문 화 예술당	직 능 연합당	진 보 당	평화통일 가정당
계	222	30	30	5	25	9	30	18	15	30	30
TV	97	15	15	3	15	-	15	4	-	15	15
라디오	125	15	15	2	10	9	15	14	15	15	15



〈방송광고 장면〉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방송연설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정당별로 비례대표후보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 두 명이 각각 1회 1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지역구선거의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로 실시할 수 있다.

방송연설은 지역구선거의 경우 총 1,119명의 후보자 중 23.2%에 해당하는 260명만이 실시하

였고, 실시횟수도 텔레비전 방송시설의 경우 1인당 1.5회, 라디오 방송시설의 경우에는 총 6회만 실시하는 등 1인당 법정횟수 2회에 크게 못 미쳤다.

비례대표선거에서도 방송연설을 실시한 정당은 15개 정당 중 5개 정당에 불과하여 방송연설이 활발하게 전개되지는 못하였다.(표 3-19, 표 3-20)

한편, 방송사의 부담으로 시행하는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은 후보자 간의 공평성만 유지된다면 방송시간, 횟수에 제한이 없음을 물론, 모든 선거의 후보자에게 방송연설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과 구별된다.

이번 선거에서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은 총 295회(텔레비전 220, 라디오 75)가 실시되었고 참여한 후보자수는 총 350명에 이른다.(표 3-21)

[표 3-19] 정당별 방송연설 실시상황(비례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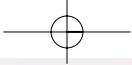
(단위 : 명, 회)

구 분	계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친박연대	기독교당	평화통일가정당
텔레비전	8	2	2	2	-	2
라디오	8	2	2	2	2	-

[표 3-20] 지역구후보자 방송연설 실시상황

(단위 : 명, 회)

후보자수	연설실시 후보자수	법정가능 횟 수	텔 레 비 전			라 디 오	
			계	실 시 횟 수		법정가능 횟 수	실시횟수
				지상파	종합유선		
1,119	260	2,238	382	259	123	2,238	6



[표 3-21] 방송시설주관 후보자방송연설 실시상황

(단위 : 명, 회)

후보 자수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사별 실시횟수						참석 후보 자수	방송사별 실시횟수								참석 후보 자수
	계	KBS	MBC	SBS	지역 방송	종합 유선 방송		계	KBS	MBC	SBS	CBS	PBC	BBS	기타	
1,119	220	28	31	1	23	137	284	75	18	22	0	7	1	7	20	66

경력방송

한국방송공사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텔레비전과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 이상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 및 직업 기타 주요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한 경력방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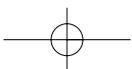
경력방송 장면 (전남 광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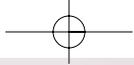
이번 선거에서 경력방송은 한국방송공사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법정횟수인 2회를 모두 방송하였으며, 한국방송공사 외의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은 지상파 방송은 거의 실시되지 않았고 지역 종합유선방송에서 대부분 실시하였다.(표 3-22)

[표 3-22] 지역구후보자 경력방송 실시상황

(단위 : 명, 회)

후보자수	경력방송 실시 횟수			비 고
	합계	텔레비전	라디오	
1,119	1,131	557	574	※비례대표후보자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별로 각 2회 실시





[04] 언론기관 등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공명선거를 추진할 수 있는 단체 등과 언론기관은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언론기관에서 주관하는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수도권 지역 외에는 각 지역의 지상파방송 및 지방신문, 지역종합유선방송사 등에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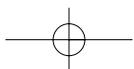
단체의 후보자초청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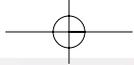
이번 선거에서는 언론기관이 198회(단체와 공동 개최 11회 포함), 단체 36회 등 총 234회가 개최되어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시의 361회보다 크게 감소하였다.(표 3-23)

[표 3-23]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상황

(단위 : 회)

구 분	개최횟수	주최별			개최시기별	
		언론기관	단체	언론·단체공동	선거기간 전	선거기간 중
제17대 국선	361	282	56	23	185	176
제18대 국선	234	187	36	11	105	129
증감	△127	△95	△20	△12	△80	△47





| 05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KBS와 MBC 텔레비전을 이용,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정당의 대표자 등을 초청하여 정책토론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초청하여 3회(비초청 1회 포함)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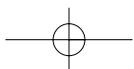
한편,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 후보자를 초청하여 지역방송사를 이용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였다.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이번 선거에서 공직선거 정책토론회는 총 3회 개최하였으며 이를 KBS와 MBC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에 동시 생중계하였다.(표 3-24)

[표 3-24]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개최상황

구 분	제1차	제2차	제3차
개최일시	2008. 1. 31(목) 10:00 ~ 12:00	2008. 2. 29(금) 10:00 ~ 12:00	2008. 3. 13(목) 23:20 ~ 3. 14(금) 01:20
개최장소	MBC A스튜디오	KBS TS-4 스튜디오	MBC D스튜디오
토 론 자	4개 정당의 원내대표 (*창조한국당 불참)	5개 정당의 정책위의장	5개 정당의 당대표
사 회 자	신 울(명지대 교수)	엄 길 청(경기대 교수)	박 선 영(동국대 교수)
토론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주제 : 정부조직 개편의 쟁점 • 소주제 : 경제 기능, 통일·안보 기능, 교육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주제 :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정책 방향 • 소주제 : 대기업 정책, 중소기업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주제 :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정치적 의미와 정책선거의 실현 • 소주제 : 정책선거의 실현 방안, 깨끗한 선거의 실현 방안
중계방송	KBS, MBC TV 동시 생중계		



초청 정당은 선정 요건에 따라 제1차 토론회의 경우는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창조한국당의 5개 정당이었으나, 제2·3차는 정당의 창당·합당 등으로 변경이 있어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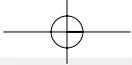
이번 정책토론회는 진행방식에서 '제한적 시간총량제'를 도입하여 토론자 간 역동적인 토론이 되도록 구성하였고, 토론 주제를 차수별로 '정부조직 개편의 쟁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정책',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정치적 의미와 정책선거의 실현'으로 선정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기여하고, 깨끗한 선거와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네거티브 선거 방지법 추진', '정책선거 토론회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토론의 질적 향상이 있었다.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

이번 선거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 초청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의 후보자 토론회 2회, 비총족 정당의 후보자 토론회 1회 등 총 3회 개최하였으며, 이를 KBS와 MBC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에 동시 생중계하였다.

「공직선거법」상 초청 요건을 충족한 정당은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5개로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가 모두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표 3-25) 또한, 요건 비총족 정당은 '친박연대', '국민실향안보당', '기독교당', '시민당', '문화예술당', '신미래당', '직능연합당', '진보신당', '평화통일가정당', '한국사회당' 10개였으나 이 중 '문화예술당'이 참석을 포기하여 9개 정당만 토론회에 참석하였다.(표 3-26)

이번 비례대표 후보자토론회를 통하여 정당에는 책임있는 정책 주장의 기회를 주고 유권자에게는 정당의 정책을 비교·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바, 특히 부재자투표기간(4. 3~ 4. 4) 전에 요건 충족 및 비총족 정당의 토론회를 각 1회씩 개최함으로써 부재자신고인의 정당 선택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Part 01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 ● ●



비례대표후보자 2차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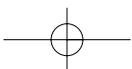
진행방식은 토론자가 5명인 경우는 ‘후보자 간 상호 자유토론’으로 경직성을 배제하고, 9명인 경우는 상호토론이 어려워 ‘사회자 공통질문·후보자 답변’을 채택하여 토론자 수에 따라 적절한 진행방식을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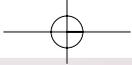
토론 주제는 전문가 단체에 추천을 요청하고 여론조사에서 선호도가 높은 경우에도 토론에 부적

합한 주제는 선정하지 않는 등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많은 유권자에게 토론회 개최를 알리기 위하여 옥외전광판·포털사이트·텔레비전 자막 등 유료 광고를 실시하였으며 시청자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여 퀴즈 32,793명, 소감문 적기 2,429명이 참여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표 3-25] 비례대표 후보자토론회 개최상황(초청요건 충족 정당)

구 분	제1차	제2차
개최일시	2008. 3. 31(월) 10:00~12:00	2008. 4. 4(금) 10:00~12:00
개최장소	MBC D스튜디오	KBS TS-2스튜디오
토 론 자	비례대표후보자 5명 (송민순, 정옥임, 박선영, 지금중, 김석수)	비례대표후보자 5명 (최영희, 나성린, 김용구, 이정희, 이용경)
토론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람직한 남북관계 정립 방안 한미FTA 국회 비준 교육의 자율화와 기회균등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가안정 대책 비정규직 문제 국민연금 개선 방안
사 회 자	송 지 현(방송인)	
중계방송	KBS, MBC TV 동시 생중계	





[표 3-26] 비례대표 후보자토론회 개최상황(초청요건 비중족 정당)

(단위 : 명)

개최일시	개최장소	토론자	토론주제	사회자	중계방송
2008. 4. 1(화) 14:00~16:00	MBC D스튜디오	송영선, 이애란, 김명규, 류승구, 김호일, 박형방, 김석준, 손대오, 오준호	위 <표 3-25>의 모든 주제	송 지 현 (방송인)	KBS, MBC 텔레비전 동시 생중계

지역구후보자 대담·토론회 및 합동방송연설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 7회, 토론회 185회, 합동방송연설회 191회 등 총 383회의 대담·토론회 및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였다.(표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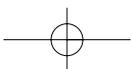
이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시의 총 270여회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것이며 이는 당시에는 초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자의 참석 규정이 없었으나 2005년에 관계 조항이 신설되어 비초청 후보자의 합동방송연설회 제도가 도입되어 총 140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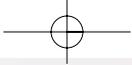
중앙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지역구 후보자토론회 등의 완벽한 주관·진행을 위하여 그동안 축적된 관리 경험과 자료를 그룹웨어를 통하여 공유하고 시·도별 집합교육을 통하여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구·시·군 신규 간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면서도 다양한 진행방식을 도입하고 주제를 수집·선정하여 토론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주고 미디어선거·정책선거의 정착에 기여한 효과가 있었다.



지역구후보자 토론회 (전남 광양)





Part 01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표 3-27] 지역구후보자 대담·토론회 및 합동방송연설회 개최상황

(단위 : 개, 회)

선거구수	총계	대담			토론				합동방송연설			
		계	초청	비초청	계	초청	비초청	합동	계	초청	비초청	합동
245	383	6	6	0	186	136	1	49	191	0	140	51

※ 초청대상자 미개최 선거구(3) : 노원갑(서울), 안산단원읍(경기), 진안·무주·장수·임실(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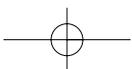


지역구후보자 토론회 (강원 춘천)

다만, 일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가 토론회에 불참하여 토론회가 파행되거나 합동방송연설회로 대체되었고,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못한 후보자 등의 여론조사 신뢰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아침이나 심야 시간의 중계방송시간대 편성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평가되었다.

|06|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 게시 및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으며 후보자 및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많은 정당·후보자들이 인터넷광고 및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실시하였다.



〈정당의 인터넷광고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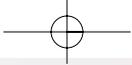


| 07 |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정당·후보자 또는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연설원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 또는 대담하는 방식으로 이번 선거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소음규제 규정이 없는 데다 후보자들이 대중가요를 개사하여 사용하는 로고송을 계속 송출하여 확성기 소음에 대한 항의민원이 빈발하였다.



연설·대담 차량



Part 01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다양한 방법의 선거운동

한편, 후보자들의 현수막은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되었으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선거사무원들이 동일한 모양과 색상의 모자·티셔츠를 입고 울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선거운동이 전개되었다.

: 선거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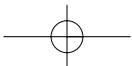


선거비용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선거비용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선거는 금권·타락선거가 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선거 실시 전에 미리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공고한다. 정당과 후보자는 공고된 제한액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출한 선거비용 중에서 선거비용보전 요건에 해당하는 선거비용은 국가의 예산으로 보전한다.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선거비용 제한액의 비용산정이 항목별 산정방식에서 총액산정 방식으로 개정되고 보전요건도 완화되어 헌법의 이념인 완전 선거공영제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위원회는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의 진실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하여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선거 종료 후뿐만 아니라



선거기간 전·중에도 선거비용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등 강화된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의 철저한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실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 01 | 선거비용제한액

관할 선거구위원회는 2007년 11월 30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여 공고하였으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2008년 2월 29일 변경 공고하였다. 비례대표 선거비용제한액은 4,428,000천원으로 지난 제17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1,269,000천원보다 348%가 증가하였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245개 선거구 평균제한액이 1억 8,600만원으로 지난 제17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243개 선거구 평균제한액 1억 7,000만원보다 10.0% 증가하였다.(표 3-28, 그림 3-7)

이처럼 선거비용제한액이 증가한 이유는 선거비용 산출방식의 변경과 제한액산정비율 적용 등에 있다. 즉,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산출방식이 지난 제17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인구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에 3억원을 더하였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인구수에 90원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법으로 바뀌었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직전 선거 이후의 전국소비자물변동률 9.2%를 감안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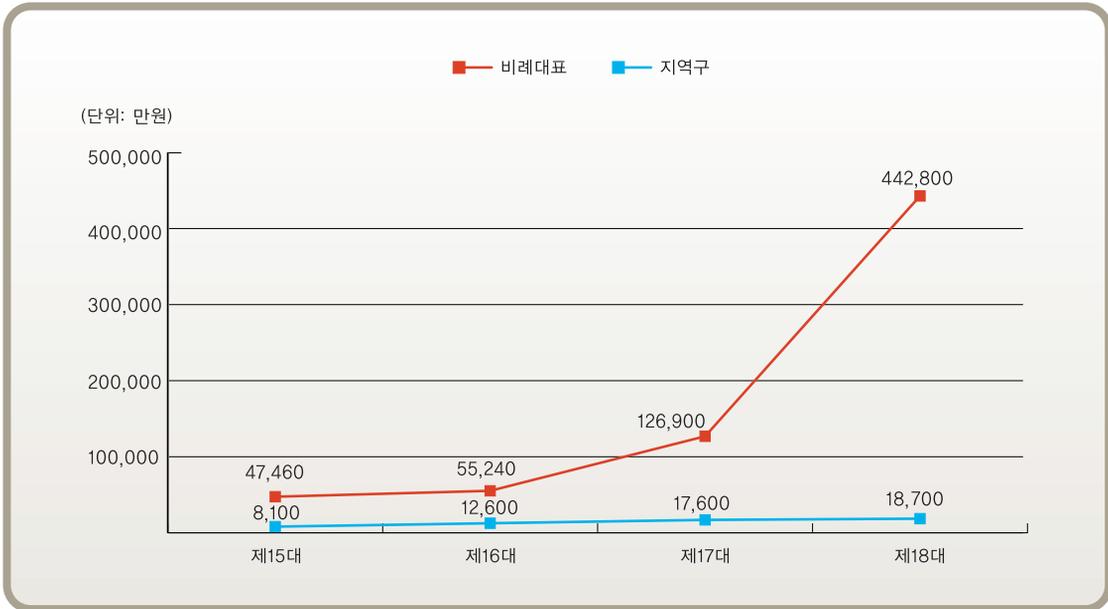
[표 3-28]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상황

(단위 : 천원)

비례대표	지역구				
	평균	최 다		최 소	
		선거구명	금액	선거구명	금액
4,428,000	187,000	군산시	232,000	광주 광산구을	152,000



[그림 3-7] 선거비용제한액 변동추이



※ 지역구는 선거구 평균 제한액임.

|02| 선거비용 지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후보자는 선거일 후 30일인 2008년 5월 9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일 후 40일인 2008년 5월 19일까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등록 취소된 정당은 등록 취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인 2008년 4월 29일까지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비례대표후보자를 등록한 15개 정당의 평균지출액은 1,649,108천원으로 선거비용제한액 중 37.2%를 지출하였고, 지역구후보자의 평균지출액은 102,730천원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의 55.3%를 지출하였다.(표 3-29, 그림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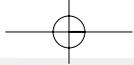
이처럼 선거비용 평균지출액이 증가한 것은 인터넷광고 등 각종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출이 다양화되었기 때문이다.

[표 3-29] 선거비용 지출상황

■ 비례대표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제한액대비 지출율(%)	비고
합 계 (평균)	24,736,607 (1,649,107)	37.2	선거비용제한액 : 44억 2,800만원
통합민주당	4,403,008	99.4	
한나라당	4,312,436	97.4	
자유선진당	3,069,406	69.3	
민주노동당	3,658,586	82.6	
창조한국당	374,866	8.5	
친박연대	4,245,984	95.9	
국민실향안보당	102,094	2.3	
기독교당	968,789	21.9	
문화예술당	11,942	0.3	
시민당	0	0.0	
신미래당	0	0.0	
직능연합당	60,323	1.4	
진보신당	577,309	13.0	
평화통일가정당	2,939,624	66.4	
한국사회당	12,240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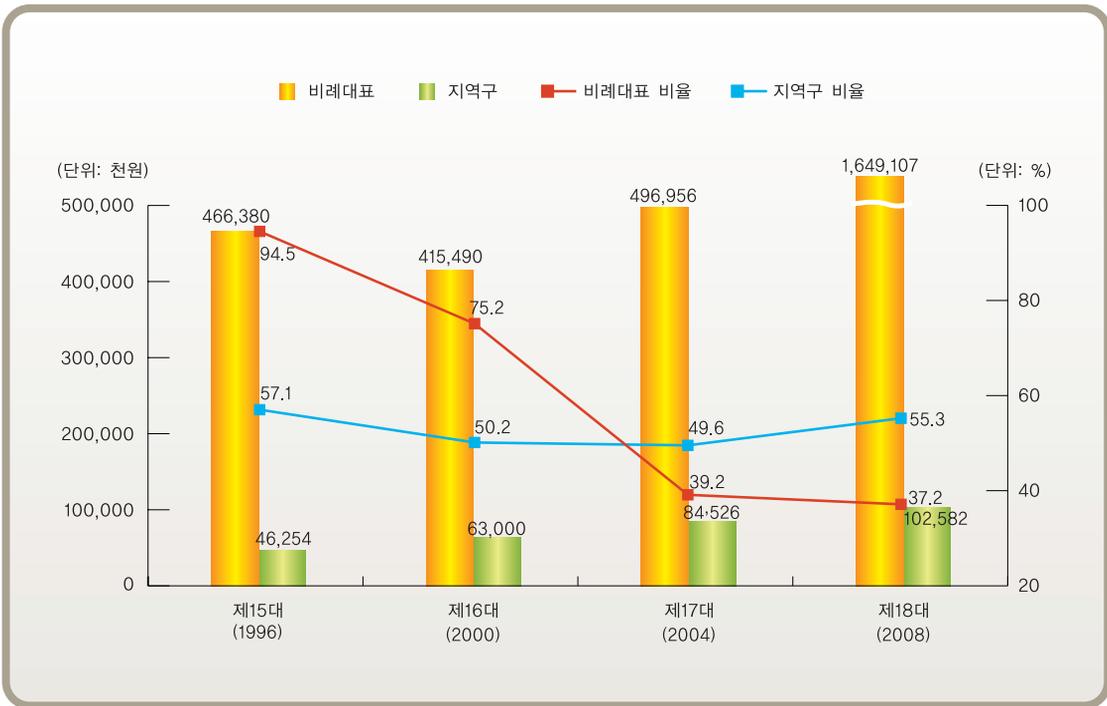
Part 01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 지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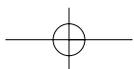
(단위 : 개, 명, 천원, %)

선거구수	수입·지출보고서 제출상황			선거비용 지출상황			
	보고서 접수상황			보고서 제출 후보자수	선거비용 제한총액 (1후보자당 평균)	지출신고액 (1후보자당 평균)	1후보자당 평균 지출률(%)
	제출대상 후보자수	제출 후보자수	미제출 후보자수				
245	1,119	1,119	-	1,119	185,646	102,582	55.3

[그림 3-8] 선거비용 지출률 추이(제한액대비 지출액)



※ 지역구는 선거구 평균 지출액 및 지출률임



| 03 | 선거비용 보전

선거비용 보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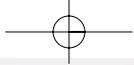
선거비용의 보전요건은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요건과 동일하다. 즉,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원회가 공고한 제한액의 범위 안에서 국가의 예산으로 보전해 준다.

이번 선거에서 보전 대상인 정당·후보자는 2008년 5월 9일까지 보전을 청구하였으며, 선거구위원회에서는 그 지출 내역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지조사를 거쳐 2008년 6월 5일에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었다.(제4절 중 '선거비용 확인·조사' 편 참조)

이번 선거에서는 비례대표의 경우 선거에 참여한 15개 정당 중 6개 정당에 18,388,399천원을 보전하여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4,150,060천원보다 443.1% 증가하였으며, 지역구는 1,119명의 후보자 중 576명의 후보자에게 60,131,687천원을 보전하여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49,938,043천원보다 120.4%가 증가하였다. 보전비용이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하여 증가한 것은 선거비용제한액의 증가와 함께 선거비용 지출률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하며, 예비후보자·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 위법행위에 소요되거나 초과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하지 않고, 상기 관련범죄로 기소되거나 우리 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의 금액은 보전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보전하지 않거나 유예된 보전비용은 246,131천원이었다.(표 3-30)



Part 01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 ● ●

[표 3-30] 선거비용 보전상황

■ 비례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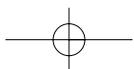
(단위 : 천원)

후보 추천 정당	보전 대상 정당	정당별 보전내역							평균보전액
		계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15	6	18,388,399	4,194,802	4,210,112	2,826,523	3,241,812	344,218	3,570,932	3,064,733

■ 지역구

(단위 : 천원)

정당명	등 록 후보자수	보전대상후보자수		보전대상액	보전유예액	보전액	1인당평균 보전액
		100%	50%				
계	1,119	513	63	60,131,687	246,131	59,885,556	103,968
통합민주당	197	169	17	19,948,081	78,096	19,869,985	106,828
한나라당	245	215	4	23,921,873	45,968	23,875,905	109,022
자유선진당	94	25	8	3,385,435	448	3,384,987	102,575
민주노동당	103	11	12	1,469,054	0	1,469,054	63,872
창조한국당	12	1	0	87,971	0	87,971	87,971
친박연대	53	18	9	2,105,283	80,344	2,024,938	74,998
구국참사람연합	1	0	0	0	0	0	0
국민실향안보당	2	0	0	0	0	0	0
기독교당	3	0	0	0	0	0	0
직능연합당	2	0	0	0	0	0	0
진보신당	34	5	3	600,992	0	600,992	75,124
통일당	1	0	0	0	0	0	0
평화통일가정당	245	0	2	79,644	0	79,644	39,822
무소속	127	69	8	8,533,354	41,275	8,492,079	110,287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용 부담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어 보전요건을 충족한 정당·후보자만 보전받을 수 있었으나, 2006년 실시한 제4회 지방선거부터는 시각장애 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기회의 확대를 위해 보전요건에 관계없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한 모든 정당·후보자에게 그 작성비용을 전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부담하게 되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한 6개 정당에게 부담해 준 비용은 총 255,600천원으로 평균 42,600천원이었고, 후보자에게 부담해 준 비용은 총 549,364천원으로 평균 796천원이었다.(표 3-31)

【표 3-31】 점자형선거공보 작성비용 부담상황

■ 비례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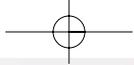
(단위 : 천원)

합 계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255,600	66,539	47,850	36,389	66,539	19,604	18,679

■ 지역구

(단위 : 천원)

정당명	등록 후보자수	제출 후보자수	부담액	1인당 평균 부담액
계	1,119	690	549,364	796
통합민주당	197	151	128,058	848
한나라당	245	194	146,649	756
자유선진당	94	36	33,157	921
민주노동당	103	66	51,962	787
창조한국당	12	4	3,808	952
친박연대	53	26	17,966	691
구국참사람연합	1	0	0	0
국민실향안보당	2	1	1,291	1,291
기독교당	3	0	0	0
직능연합당	2	0	0	0
진보신당	34	25	18,792	752
통일당	1	0	0	0
평화통일가정당	245	127	97,140	765
무소속	127	60	50,541	842



정당의 활동



이번 선거에서는 각 정당이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정강·정책의 홍보 등 정당활동은 다소 활발하지 못하였으나, 선거기간이 임박하자 주요 정당들은 국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신문광고·방송연설)를 통해 각 당의 정강·정책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직전 제17대 대통령선거와는 달리 정책제시와 홍보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와 함께 신문광고 및 방송연설 원고의 사전검토 등을 통해 위반행위 예방에 주력하였다.

|01| 정강·정책 신문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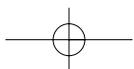
정당의 중앙당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70회까지 정강·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지망자의 모집 등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8개 정당이 총 99회의 신문광고를 실시하였다.(표 3-32)

계재내용은 국회의원선거라는 특성상 선거운동성 내용보다는 후보지망자의 모집이나 정강·정책 홍보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표 3-32] 정강·정책 신문광고 상황

(단위 : 회)

합 계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국민실향 안보당	기독교사랑 실천당	문화예술당	통일한국당	평화통일 가정당
99	3	13	2	3	6	1	5	66



| 02 | 정강·정책 방송연설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는 선거일 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까지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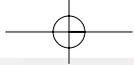
이번 선거에서는 3개 정당이 텔레비전 14회, 라디오 12회 등 총 26회의 방송연설을 실시하였는바, 공영방송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정당(통합민주당, 한나라당)은 그 기회를 모두 활용한 반면, 평화통일가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군소정당은 방송연설을 아예 실시하지 않았다.(표 3-33)

한편, 텔레비전 방송연설의 경우 대부분의 정당에서는 자당의 대표자 또는 정책위의장 등을 연설자로 지명하여 방송연설을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에서도 정강·정책을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표 3-33] 정강·정책 방송연설 상황

(단위 : 회)

합 계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평화통일가정당	
텔레비전	라디오	텔레비전	라디오	텔레비전	라디오	텔레비전	라디오
14	12	6	6	6	6	2	-



[03] 정강·정책홍보물, 정당기관지 및 정책공약집 발행

정당의 중앙당은 선거기간 중에 정강·정책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정당기관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주기(발행횟수가 2회 미만인 때에는 2회 이내)에 따라 발행·배부할 수 있으며, 배부 전에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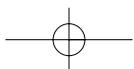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정책공약집의 발행·판매제도 도입 등으로 인하여 정강·정책홍보물을 발행한 정당은 없었으며, 정당기관지의 경우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한국사회당이 4회에 걸쳐 총 253,462부를 발행·배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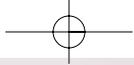
또한, 정책공약집은 3개 정당에서 총 8종 6만 3,000부를 발행하였으며 그 판매가격은 한부에 최저 500원부터 최고 3,000원이었다.(표 3-34)

[표 3-34] 정책공약집 발행·판매상황

(단위 : 종, 부)

합계		통합민주당		구국참사람연합		평화통일가정당		비고
종수	부수	종수	부수	종수	부수	종수	부수	
8	63,000	6	24,000	1	1,000	1	38,000	• 판매가격 - 통합민주당 : 3,000원 - 구국참사람연합 : 500원 - 평화통일가정당 : 500원





투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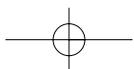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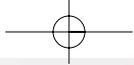
투표는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선거일에 선거권이 있는 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의 투표는 2008년 4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3,246개 투표소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투표율은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60.6%보다 무려 14.5%나 낮아진 46.1%로서 이는 그동안 실시된 전국단위 선거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던 제3회 지방선거의 48.9%보다도 2.8%나 하락한 역대 최저 투표율에 해당한다.

우리 위원회는 갈수록 낮아지는 투표율을 감안하여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주요 정당의 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내부갈등, 선거기간에 임박한 후보자 결정으로 정책경쟁 실종 등이 국민을 정치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투표율 하락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대다수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전체 유권자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투표율,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투표율 하락폭이 15%에 육박하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자체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01 | 투표소 설치

투표소는 선거인수와 투표편의를 고려하여 투표구 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와 복지회관 등에 설치하며 투표소수는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보다 79개소가 늘어난 13,246개소였으며, 투표구 관할구역 내에 적당한 설치장소가 없어 인접한 다른 투표구에 설치한 투표소는 전체 투표소의 6.6%인 875개소였다.(표 3-35, 표 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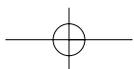
특히, 장애인 투표편의를 위하여 전체 투표소의 95.7%에 해당하는 12,680개소의 투표소를 1층에 설치하였고, 부득이한 사유로 1층이 아닌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였거나 1층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이 투표하기에 불편한 투표소에 대하여는 엘리베이터, 임시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확보하거나 새로 편의시설을 설치하였다.

[표 3-35] 설치장소별 투표소수 현황

(단위 : 개)

구분	계	학 교	읍면동 등 관공서 사무소	공공기관 · 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종교시설				기타
						교회	성당	사찰	기타 종교시설	
제17대 국선	13,167 (950)	6,469 (642)	1,910 (78)	724 (44)	1,037 (18)	통계 없음	통계 없음	통계 없음	통계 없음	3,027 (168)
제18대 국선	13,246 (875)	6,629 (622)	1,887 (94)	998 (37)	949 (13)	766 (45)	79	2	2	1,934 (64)
증감	79 (Δ75)	160 (Δ20)	Δ23 (16)	274 (Δ7)	Δ88 (Δ5)	-	-	-	-	Δ1,093 (Δ104)

※ ()는 당해 투표구 관할구역을 벗어나 인근 투표구에 설치한 투표소로서 분수에 포함.



또한,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거주지에서 투표소간 왕복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제도’를 시행하는 등 장애인의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다.(표 3-46 참조)



투표소 설치

한편, 직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발생한 종교시설에의 투표소 설치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항의와 헌법소원 제기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교회 설치 투표소는 제17대 대통령선거보다 284개 줄어든 766개소에만 설치하였다.(표 3-37)

[표 3-36] 선거인수별 투표구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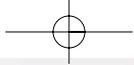
(단위 : 개)

구 분	투표구수	5백 미만	5백~1천미만	1천~ 2천 미만	2천~3천 미만	3천~ 4천 미만	4천 이상
제17대 국선	13,167	405	988	2,397	3,292	4,401	1,684
제18대 국선	13,246	364	883	2,185	2,980	4,471	2,363
증 감	79	△41	△105	△212	△312	70	679

[표 3-37] 종교시설 설치 투표소수 현황

(단위 : 개, %)

구 분	투표소수	계	교회	성당	사찰	기타 종교시설
제17대 국선	13,178	1,194 (9.1)	1,050 (8.0)	105 (0.8)	14 (0.1)	25 (0.2)
제18대 대선	13,246	849 (6.4)	766 (5.8)	79 (0.6)	2 (0.02)	2 (0.02)
증 감	68	△345 (△2.7)	△284 (△2.2)	△26 (△0.2)	△12 (△0.08)	△23 (△0.08)



|02| 투표관리요원 확보·운영

투표관리요원은 투표사무를 관리하는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 투표진행상황을 참관하는 투표참관인과 투표안내도우미 등이 있다.

투표관리관과 읍·면·동위원회 위원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의 설비, 투표용지 수령·교부 등 투표관리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투표관리관은 각 투표소마다 선거경험이 풍부한 국가·지방공무원 중에서 투표소별 1인씩 총 13,246명을 위촉·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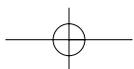
읍·면·동위원회는 중전의 투표구위원회를 대체하기 위해 2005년 8월 4일 신설된 것으로 평균적으로 4개의 투표구를 관할하며 투표관리사무를 관장하는 위원회 최하위 의결기관으로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각 1인과 구·시·군위원회가 자체 선정한 위원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이번 선거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2개 정당이어서 각 읍·면·동위원회별 위원 정원은 6명이었으나 정당별로 특정지역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등 1,209명(5.7%)이 결원인 상태에서 선거를 관리하였다.(표 3-38)

[표 3-38] 읍·면·동위원회 위원현황

(단위: 명)

정원	현원	결원	결원내역			
			일반 위원	정당추천위원		
				계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21,252	20,043	1,209	9	1,200	768	432



투표사무원

투표사무원은 투표관리관의 지시를 받아 투표사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동안은 공무원·교직원·금융기관의 직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인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투표관리 인력풀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총 93,198명의 투표사무원이 전국 13,246개의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에 종사하였고 투표소당 평균 사무원수는 7명이었다. 이는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65,435명보다 27,763명(투표소당 평균 2명) 증가하였으나, 투표구위원회 폐지에 따라 감축된 투표구위원수(제17대 국선시 투표구위원수 80,731명)를 감안하면 투표관리사무의 정형화와 체계화를 통해 오히려 적은 인원으로 투표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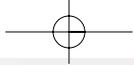
한편, 투표사무원 위촉대상기관이 다양화되고 일반인의 투표사무원 위촉이 가능해져 그간 투표사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공무원과 교직원의 비율은 90.8%에서 72%로 줄어든 반면, 일반인의 위촉비율은 20.6%나 차지하였다.

[표 3-39] 투표사무원 위촉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국 가 공무원	지 방 공무원	교직원		금융기관 직원	정부투자 기관직원	농협 등 조합직원	지방공사 공단직원	공정중립 인사
				교원	직원					
제17대	65,435	949	58,465	3,339	453	70	161	246	58	1,694
제18대	93,198	128	67,047	4,463	1,538	172	93	508	72	19,177
증 감	27,763	△821	8,582	1,124	1,085	102	△68	262	14	17,483

※ 제17대 국선시의 투표구위원 80,731명은 미포함.



[표 3-40] 투표도우미 활용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공무원	공익요원	자원 봉사자						일용인부	기타
				소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시민·사회단체		
제17대	47,115	12	318	41,611	11,667	28,933	2	570	439	5,081	57
제18대	46,416	48	8	44,374	7,946	35,032	81	819	496	1,902	120
증 감	△699	△36	△310	2,763	△3,721	6,099	79	249	57	△3,179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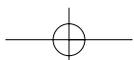
※ 투표도우미 외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2,541명 추가 배치(표 3-46 참조)

또한, 투표안내도우미는 총 46,416명을 확보하여 투표소마다 세 명 이상을 배치하여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보행편의, 인주내장형 기표용구 사용법 안내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2,541명을 확보하여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기를 원하는 8,493명의 중증장애인에게 투표편의를 제공하였다.(표 3-40)

투표참관인

투표참관인은 선거인의 투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투표관리사무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표진행의 전 과정을 참관하는 자이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무소속후보자마다 투표소별 각 두 명씩을 선정하여 읍·면·동위원회에 신고하며 각 투표소별로는 최대 12명, 최소 네 명 기준으로 운영되었다. 그 결과 투표참관인 총수는 81,748명으로 투표구당 평균 6.2명이었으며, 그중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이 99.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표 3-41)



[표 3-41] 투표참관인 선정·지정상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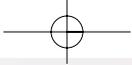
계	정 당 · 후 보 자 등 선 정														자체 선정
	소계	통합 민주당	한나 라당	자유 선진당	민주 노동당	창조 한국당	친박 연대	국민 실향 안보당	기독당	직능 연합당	진보 신당	평화 통일 가정당	한국 사회당	무소속	
81,748	81,094	18,991	23,430	6,141	7,768	544	3,094	21	41	6	2,518	9,783	312	8,445	654

| 03 | 투표용지 작성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중앙위원회는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의 투표용지가 서로 구분되도록 작성방법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역구선거는 백색, 비례대표선거는 연두색 용지를 사용하도록 결정하고, 투표함도 투표용지의 색상과 동일한 색상의 종이투표함을 사용하여 투표용지의 혼입을 방지하였다. 아울러 개표시 투표지분류기의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고 정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특수용지를 사용하였다.

투표용지는 선거구위원회가 후보자등록마감 후 게재순위(기호)를 결정하고 구·시·군 위원회 별로 사전 결정·공고한 인쇄소에서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인쇄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위원회에 송부하고 읍·면·동위원회는 선거일 오전 5시까지 해당 투표소로 각각 송부하였다.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무소속후보자 순으로 정



Part 01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하게 된다. 국회의석이 있는 정당 사이의 계재순위는 전국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⁶한 후 국회의석순으로 하고, 국회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명칭의 가나다순으로, 무소속후보자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한다. 한편,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을 경우 투표용지에 당해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만을 기재하고 후보자의 성명 및 기표란은 각각 좌우 대각선을 그어 작성하였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용지에 해당 정당의 난을 아예 게재하지 않도록 하였다.

〈투표용지 견본〉

국회의원선거투표용지
(중평군천천군괴산군음성군)

1	통합민주당	김종률	
2	한나라당	김경희	
3	자유선진당	송석우	
6	친박연대	김종호	
7	평화통일가정당	박상규	

투표관리관

No. 08936

▲ 지역구 투표용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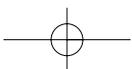
1	통합민주당	
2	한나라당	
3	자유선진당	
4	민주노동당	
5	창조한국당	
6	친박연대	
7	국민실향안보당	
8	기독교당	
9	문화예술당	
10	시민당	
11	신미래당	
12	직능연합당	
13	진보신당	
14	평화통일가정당	
15	한국사회당	

투표관리관

No.

▲ 비례대표 투표용지

- ⁶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 부여한다.
-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 04 | 투표안내문 발송

투표안내문에는 세대별로 선거인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약도),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1인 2표제 실시에 따른 투표용지 색상, 투표절차 및 방법 등이 게재되어 있다. 구·시·군위원회는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인 4월 4일까지 투표안내문을 전국의 모든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매 세대에 발송한 우편물에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지역구후보자 및 비례대표정당에서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총 242,073,201매)가 함께 발송되었다.

투표안내문 발송시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투표소 약도를 동봉하고, 우리 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 전국 모든 투표소의 약도(지도)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지역구, 비례대표) 투표안내문>

투표일시	4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장소	서울농학교 대강당(1층)

- ▶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꼭 가지고 가십시오. (봉투 뒷면에 해당 신분증 예시가 있습니다)
- ▶ 지역구(후보자) 1장, 비례대표(정당) 1장 이렇게 투표용지 2장을 받아 기표합니다.
 - 투표용지 색상: 지역구 - 백색, 비례대표 - 연두색
- ▶ 투표소 위치는 온라인홍보색션(<http://epol.nec.go.kr>)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검색하거나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세요.

▶ 투표하러 갈 때 본인의 등재번호를 오려 가면 빨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 등재내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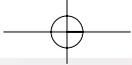
성명	공명이	서울동제1투표소 등재번호	1
----	-----	---------------	---

공명이 귀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27-727

투표장소: 서울농학교 대강당(1층)



| 05 | 부재자투표 관리

국내거주자 중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1989년 4월 10일 이전 출생자)인 선거권자로서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는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2008년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읍·면에 부재자신고서가 도착될 수 있도록 직접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거소투표대상 장애인 452,238명에게는 읍·면·동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부재자신고안내서와 부재자신고서를 발송하여 투표에 참여하도록 개별 안내하였고, 장애인보호시설·요양소 등은 허위 또는 대리로 부재자신고를 하는 일이 없도록 당해 기관·시설의 장에게 당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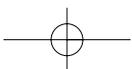
한편, 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이번 선거에서는 대학교 구내와 북한지역(개성공단, 금강산) 장기체류자 및 독도지역 거주자 외에도 인천국제공항에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부재자신고인수는 총 825,855명으로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및 부재자신고요건이 완화되기 전인 제17대 국회의원선거시의 885,938명보다도 60,083명이나 감소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 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구·시·군위원회는 2008년 3월 31일까지 부재자투표대상자에게 투표용지, 부재자투표안내문, 선거공보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부재자투표용지는 부재자신고를 한 825,855명 중 사망자 4명, 허위 또는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신고자 187명, 선거권이 없는 자 6명 등 총 197명의 부적격 부재자신고인에 대해서는



[표 3-42]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상황

(단위 : 명)

구 분	신고인수	발 송						미발송			
		계	부 재 자 투 표 소			거 소		계	사망	허위신고	선거권 없음
			일반	선 거 종사자	군인· 경찰 공무원	일반	군인· 경찰 공무원				
제17대 국선	885,938	885,692	116,361	70,688	639,733	29,345	29,565	246	6	222	18
제18대 국선	825,855	825,658	87,364	88,807	566,852	41,827	40,808	197	4	187	6
증 감	△60,083	△60,034	△28,997	18,119	△72,881	12,482	11,243	△49	△2	△35	△12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았으며, 투표용지가 발송되지 않은 부재자신고인 중 선거권이 있는 자는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인 일반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3-42)

부재자투표소 설치·운영

부재자투표소는 ‘관리주체’에 따라 구·시·군위원회 직접관리, 투표관리관 지정 운영, 기관 시설의 장 허가운영 등 3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당해 사무소 소재지에 의무적으로 1개씩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는 구·시·군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추가적으로 관할구역 안의 부재자투표 예상자의 수 및 지리·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표관리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기관·시설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시설의 장이 구·시·군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직접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부재자투표소 설치수는 구·시·군위원회가 248개, 투표관리관 155개, 기관·



[표 3-43] 부재자투표소 설치상황

(단위 : 개)

구분	계	구·시·군위원회 설치수							기관·시설 설치수			
		소계	위원회 사무실	구시군청	읍면동 사무소	공공기관 단체의 시설	대학교	기타	소계	병원	교도소 구치소	요양소 수용소
제17대 국선	502	406	38	109	82	140	12	25	96	18	48	30
제18대 국선	510	403 (155)	64 (1)	104 (1)	71 (63)	32 (12)	3 (3)	129 (75)	107	18	46	43
증 감	8	△3	26	△5	△11	△108	△9	104	11	-	△2	13

※ 투표관리관 설치수는 ()로 내서하고 본수에 포함

※ 대학교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현황 : 3개 대학(KAIST, 대구대, 원광대)

시설에서 107개 등 총 510개의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였고, 북한지역장기체류자 등 특수 지역(개성공단·금강산 출입사무소, 인천국제공항, 독도)과 대학교 내(3개소)에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였다.(표 3-43)

부재자투표 결과

부재자투표는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자 825,658명 중 757,902명이 투표하여 91.8%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그중 부재자투표소 투표자수는 680,573명이고 거소투표자는 77,329명이었다.(표 3-44)

이번 선거의 부재자투표율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시의 부재자투표율 90.7%보다는 1.1% 높았고, 제17대 대통령선거시의 93.5%보다는 1.7% 낮았다.

한편,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자는 KAIST 897명, 대구대 1,225명, 원광대 494명 등 총 2,616명이었으며, 특수지역 4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자는 총 1,474명이었다.(표 3-45)

[표 3-44] 부재자투표상황

(단위 : 명)

부재자 신고인수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자수	투표자수	부재자투표소				거소투표
			소계	구시군 위원회	투표관리관	기관·시설	
825,855	825,658	757,902	680,573	338,352	327,219	15,002	77,329

[표 3-45] 특수지역 부재자투표상황

(단위 : 명)

개성공단(4. 3)		금 강 신(4. 3)		독 도(4. 4)		인천공항(4. 3~4. 4)	
신고인수	투표자수	신고인수	투표자수	신고인수	투표자수	신고인수	투표자수
248	138	71	261	80	42	-	1,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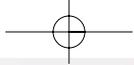
※ 금강산지역 체류자 중 투표자는 55명

※ 독도 신고인수(80명) 중 미투표자(38명)는 경비함 근무자로 거소투표 대상자

※ 인천공항 부재자투표자(1,033명) 중 근무자가 아닌 일반인은 200명 정도로 추산

| 06 | 투표 관리

투표는 4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3,246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되었고 투표진행 상황은 오전 9시까지 2시간 단위로, 11시부터는 1시간 단위로 언론사 및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였다. 이번 선거의 투표는 특별한 사건·사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전남지역의 풍랑주의보로 인해 외딴섬에 거주하는 143명의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한편, 선거일 오후 6시에 투표를 마감한 결과 선거인수 37,796,035명 중 17,415,666명이 투표를 하여 46.1%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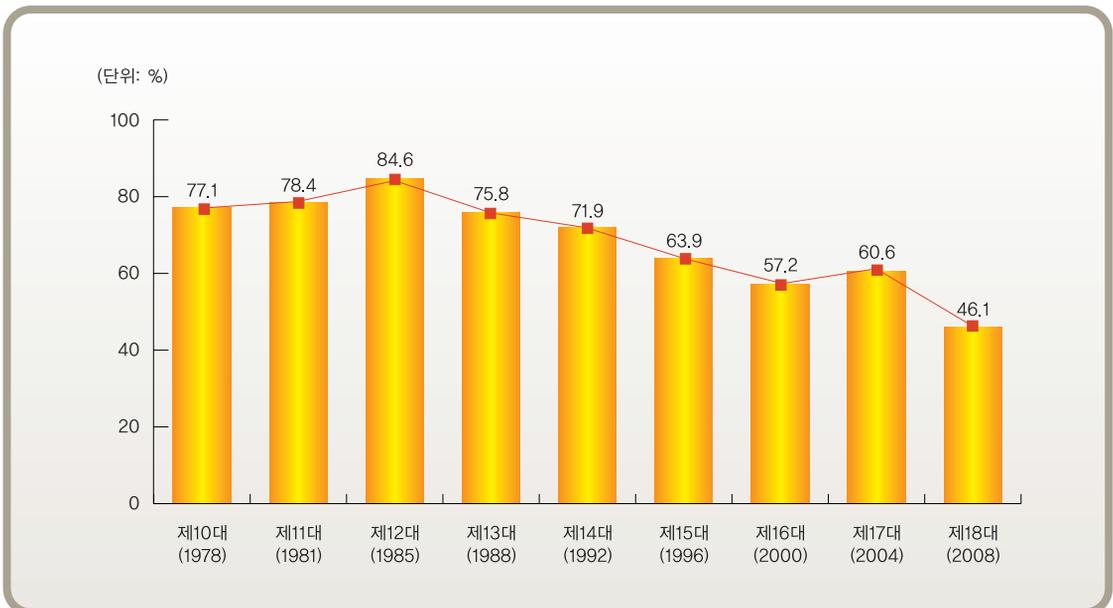
Part 01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역대 국회의원선거와의 투표율 비교

1948년 초대 선거(95.5%) 이후 제6대(72.1%)까지는 계속 하락하였다가 제6대에서 제11대까지는 70%대를 유지하여 왔으며, 제12대에서는 84.6%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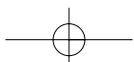
다시 제13대부터 제16대까지는 계속 하락하여 제16대에는 57.2%까지 하락하다가 제17대에는 대통령탄핵 사태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높아져 60.6%를 기록하였으나 이번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역대 최저 투표율인 46.1%까지 하락했다.(그림 3-9)

[그림 3-9] 역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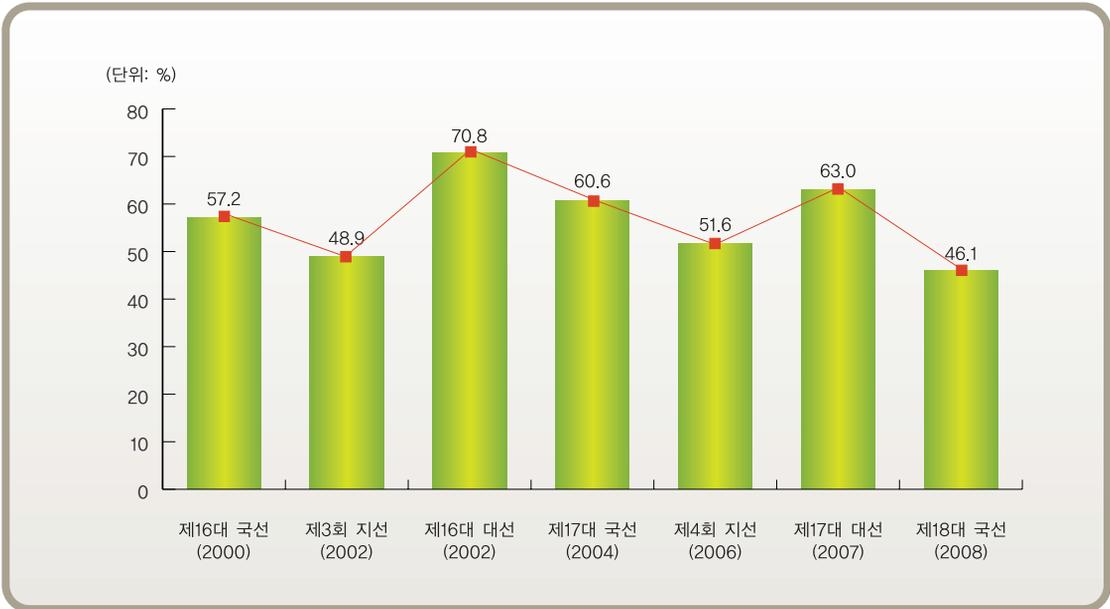


최근 실시된 선거와의 투표율 비교

2000년 이후 실시된 각종 선거의 투표율은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선거별로는 최근 실시된 선거일수록 투표율이 낮게 나타나 이번 선거에서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그림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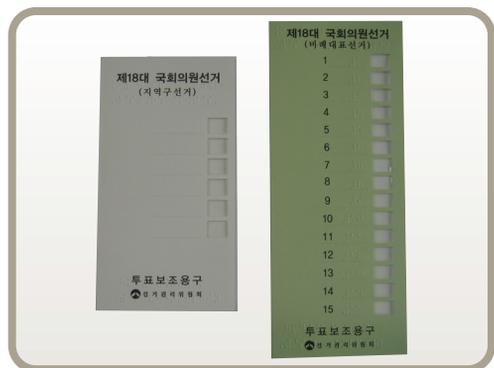


[그림 3-10] 최근 실시된 선거의 투표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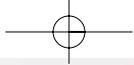


| 07 | 장애인 투표편의 제공

장애선거인의 투표소 출입이 용이하도록 투표소는 대부분 1층에 설치(95.7%)하였고, 이동에 불편이 있는 경우 이동편의시설 추가설비, 투표도우미 배치 등을 통하여 보완했다. 또한, 모든 투표소에 장애인 겸용 기표대와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를 비치하고 활동보조인(2,541명) 및 운행차량(1,112대)을 확보·운영하여 총 8,493명의 중증장애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소까지 교통편의(왕복)를 제공하였다.(표 3-46)



투표보조용구



[표 3-46] 장애선거인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내역

구 분	단위	제16대 대선 (2002)	제17대 국선 (2004)	제4회 지방선거 (2006)	제17대 대선 (2007)	제18대 국선 (2008)	
1층 투표소	%	93.0	96.5	96.0	95.7	96.0	
점자투표안내문 작성·발송	부	86,500	53,650	59,237	76,450	31,801	
음성투표 안내문 게시	기관	-	-	-	280	280	
이동 편의시설 (5종)	개소	6,908	9,769	9,459	7,944	9,051	
투표안내요원	명/투표소	3.9	3.5	4.0	3.5	3.5	
투표보조용구	조	30,600(1종)	30,000(2종)	15,825(12종)	21,490(8종)	13,246(2종)	
중증장애인 투표지원	보조인	명	-	1,917	3,393	2,132	2,541
	차량	대	-	950	1,259	1,041	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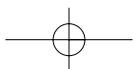
* 이동편의시설 :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장애인통로, 도움벨, 점자유도블럭

개 표



개표는 투표를 통하여 표시되는 선거인의 의사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유·무효표를 가리고 이를 집계하는 과정으로, 선거사무 중에서 핵심적이며 중극적인 사무이다.

개표사무는 개표사무원 위촉, 개표소 설치, 투표함 접수, 투표함 개함, 투표지의 유·무효 구분 및 후보자별 분류·집계, 개표결과의 공표, 개표록 작성, 투표지 포장 등의 순으로 구·시·군위원회가 이를 진행하며, 이러한 개표과정에는 정당·후보자의 참관인과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개표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개표결과는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와 각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전달된다.



|01| 개표소 설치

개표소는 2개 개표소를 설치한 인천시 옹진군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구·시·군위원회마다 각 1개소를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총 249개소의 개표소가 운영되었다.(표 3-47)

이번 선거에서 구·시·군위원회는 선거인수·투표구수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적정한 개표장소를 확보하였고, 선거일 전일인 4월 8일까지 개표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비하였다.

개표순서는 지역구선거의 개표를 먼저 실시한 후 비례대표선거의 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개의 선거구를 관리하는 위원회는 선거구별로 개표장 구획선을 설치하여 투표지의 혼입을 방지하고 질서유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개표를 진행하였다.

한편, 이번 선거의 개표당일 기상악화로 인해 일부 도서지역의 투표함이 개표일 다음 날 오후 늦게 회송되어 개표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제2개표소를 운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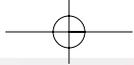
[표 3-47] 개표소 설치현황

(단위 : 개소)

계	구시군청 회의실	체육관·학교강당	시군구민회관	민방위 교육장	기타
249	42	174	19	2	12

|02| 개표관리요원 확보·운영

개표관리요원은 구·시·군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개표관리위원, 개표사무를 담당하는 개표사무원, 개표과정을 참관하기 위하여 입회하는 개표참관인, 경비경찰공무원, 관계기관 협조요원 등이 있다.



[표 3-48] 개표관리위원 현황

(단위 : 명)

정원	현원	결원	결원내역			
			일반위원	정당추천위원		
				소계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1,984	1,966	18	9	9	9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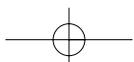
개표관리위원

개표관리위원은 구·시·군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한 2인과 법관을 포함하여 자체 선정한 6인 등 총 8인으로 구성되며, 개표과정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표 3-48)

개표사무원

개표사무원 수는 총 37,956명으로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31,761명보다 6,195명이 늘었으나, 이는 투표지분류기 운용대수 증가와 개표사무의 공정성을 한층 공고히 하기 위해 심사·집계부의 인력을 보강함에 따른 것이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일반인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개표사무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공무원과 교직원의 위촉비율은 52.2%인 반면, 일반인의 위촉비율은 40.7%를 차지하게 되었다.(표 3-49)



[표 3-49] 개표사무원 위촉상황

(단위 : 명)

계	공무원			교직원		금융기관 직원	정부투자 기관직원	농수협 조합직원	지방공사 공단직원	공정중립 인사
	국가	지방	법원	교원	직원					
37,956	1,001	13,293	380	2,662	2,466	615	146	1,730	224	15,439

[표 3-50] 개표참관인 선정·신고상황

(단위 : 명)

계	통합 민주당	한나 라당	자유 선진당	민주 노동당	창조 한국당	친박 연대	기독교 당	직능 연합당	진보 신당	평화 통일기정당	무소속
7,958	1,665	1,792	712	933	92	553	18	8	435	1,334	416

개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은 이해당사자인 정당·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자가 개표상황을 직접 참관하도록 하여 개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표참관은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6인,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신고하여 동시 참관하고, 필요시 2분의 1씩 교대참관이 가능하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249개 개표소에 총 7,958명의 개표참관인이 선정·신고되어 개표소별 평균 32명이 참관하였다.(표 3-50)

| 03 | 개표 관리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되는 대로 투표지분류기에 의한 일반투표함의 개표가 개시되었고, 관할구역 안에 2 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표함 도착순위에 상관없이 선거구단위로 개표



Part 01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하였고, 근소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선거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에 더욱 비중을 두고 개표를 진행하였다. 투표 종료 후 전국 249개의 개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 개표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충북 증평군이 4월 9일 오후 9시 18분(소요시간 2시간 35분)에 가장 먼저 종료하였고, 전남 신안군이 기상악화에 따른 일부 투표함의 회송이 지연되어 4월 10일 오후 11시 51분(소요시간 : 28시간 8분)에 마지막으로 개표를 끝마쳤다.

한편, 최종 개표결과 지역구선거의 정당별득표수는 한나라당 7,478,776표(43.4%), 통합민주당 4,977,508표(28.9%), 자유선진당 984,751표(5.7%) 순이었고, 비례대표선거에서 정당별득표수는 한나라당 6,421,727표(37.5%), 통합민주당 4,313,645표(25.2%), 친박연대 2,258,750표(13.2%) 순이었다.(표 3-51)

[표 3-51] 정당별 득표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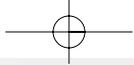
(단위 : 표, %)

정 당 명	지역구		비례대표	
	득표수	득표율	득표수	득표율
계	17,212,690	100	17,131,537	100
통합민주당	4,977,508	28.9	4,313,645	25.2
한나라당	7,478,776	43.4	6,421,727	37.5
자유선진당	984,751	5.7	1,173,463	6.8
민주노동당	583,665	3.4	973,445	5.7

(단위 : 표, %)

정 당 명	지역구		비례대표	
	득표수	득표율	득표수	득표율
창조한국당	72,803	0.4	651,993	3.8
친박연대	637,351	3.7	2,258,750	13.2
구국참사람연합	513	0.003	미참여	미참여
국민실향안보당	1,130	0.006	93,554	0.5
기독당	3,720	0.02	443,775	2.6
문화예술당	미참여	미참여	33,966	0.2
시민당	미참여	미참여	17,656	0.1
신미래당	미참여	미참여	12,122	0.07
직능연합당	881	0.005	16,622	0.09
진보신당	229,500	1.3	504,466	2.9
통일당	51	0.0003	미참여	미참여
평화통일가정당	334,715	1.9	180,857	1.05
한국사회당	미참여	미참여	35,496	0.2
무소속	1,907,326	11.1	미참여	미참여

※ 유효투표 총수 : 지역구 17,212,690표, 비례대표 17,131,537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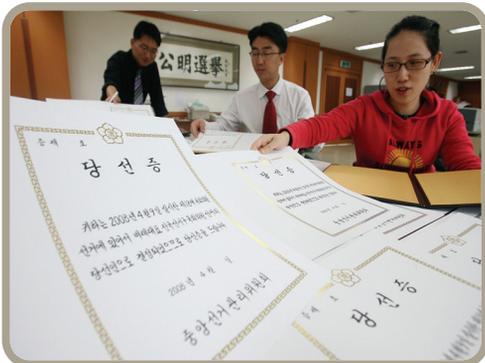


· 당선인



지역구 당선증 교부 (전북 군산)

지역구국회의원 245명은 개표 종료 후 즉시 선거구위원회별로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각각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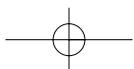
비례대표 당선증 준비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하거나 지역구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⁷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한편, 중앙위원회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위원회가 작성한 집계록을 송부받아 4월 11일 오전 9시 제9차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공직선거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통합민주당 15석, 한나라당 22석, 자유선진당 4석, 민주노동당 3석, 창조한국당 2석, 친박연대 8석을 각각 배분하고 당선인 54명을 결정하였다.(표 3-52)

⁷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표 3-52] 정당별 당선인수

(단위 : 명)

구분	계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무소속
계	299	81	153	18	5	3	14	25
지역구	245	66	131	14	2	1	6	25
비례대표	54	15	22	4	3	2	8	-

· 선거쟁송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분쟁을 소청과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소청은 선거소송의 전심절차로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만 인정되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소청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소송은 선거의 효력에 대하여는 선거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당선인의 효력에 대하여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 또는 해당 선거구위원회위원장 또는 중앙위원회위원장(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및 당선인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재배분 관련)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01 | 선거소송의 제기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6건의 선거소송(위원회 상대 4건, 당선인 상대 2건)이 제기되었는데, 그중 당선무효 소송 3건, 선거무효 소송 3건이 제기되어 지난 제16대 국회의원선거 28건, 제17대 국회의원선거 8건보다는 소폭 감소하였다.(표 3-53)

이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후보자, 유권자 등의 의식개선,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 제도의 강화, 근소표차 선거구의 감소 등이 주요한 이유라고 분석된다.

이번에 제기된 당선무효 소송은 무효투표지의 과다발생과 비례대표후보자가 실제와 다른 범 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고, 선거무효 소송은 당선인의 허위사실유포, 허위학력·경력 게재와 지역 언론매체의 불공정·편파보도 등을 이유로 한 것이었다.(표 3-54)

[표 3-53] 선거소송 제기상황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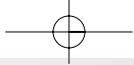
구분	계	선거무효	당선무효	선거·당선 무효	비고
계	6	3	3	-	-
종 양	2	-	2	-	당선인상대
서 울	1	1	-	-	위원회상대
부 산	1	1	-	-	"
경 기	1	1	-	-	"
경 북	1	-	1	-	"

[표 3-54] 선거구별 선거소송 제기상황

선거구명	소송구분 (제기일자)	당 사 자		소송이유	비 고
		원고	피고		
비례대표	당선무효 (2008. 4. 22)	창 조 한국당	이한정 (당선인)	피고의 실효된 형이 누락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제출	소송 진행중
비례대표	당선무효 (2008. 5. 2)	유원일 선경식	이한정 (당선인)	피고의 실효된 형이 누락된 범 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제출	"
서울 영등포구갑	선거무효 (2008. 5. 7)	통 합 민주당	영등포구 위원장	당선인의 선거공보 등에 허위 학력, 허위경력 등 게재와 피 고의 묵인·방치	"
부산 영도구	선거무효 (2008. 4. 17)	이정청 외 2,502명 (선거인)	영도구 위원장	선거구 내 지역 언론매체들의 위법, 부당한 불공정·편파 보 도행위에 대한 피고의 미조치	"
경기 여주·이천	선거무효 (2008. 4. 16)	이규택 (낙선인), 친박연대	여주군 위원장	당선인측의 후보자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한 피고의 미조치	"
경북 경산·청도	당선무효 (2008. 5. 8)	서현성 (낙선인)	경산시 위원장	과다한 무효투표 발생, 개표관 련 원고의 이익제기에 대한 피 고의 미조치	'08. 8. 21 기각

| 02 | 증거보전 신청

증거보전은 판결절차에서 지정된 기간까지 증거조사의 시기를 늦추면 증거를 조사하기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증거물의 훼손이나 분실을 예방하는 절차로, 선거쟁송을 제기할 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 투표지 및 투표록 등 선거관련 물품의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당선



인의 선거공보 등에 허위 학력·경력 게재를 이유로 한 선거무효 소송과 관련하여 해당 당선인의 선거공보 등 인쇄물과 후보자등록신청 서류 사본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1건이 제기(서울 영등포구 갑)되었다.

| 03 | 선거소송 진행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공직선거법」은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위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이해하고 있어 재판기한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나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제기된 선거소송 6건 중 1건은 기각되었고 나머지 5건은 모두 진행 중이다.

